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8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3. 11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어르신동행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 층 주민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관련 사항(안 제4조)
- 4) 지원대상자 및 방법, 내용(안 제5조~제7조)
- 5)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과 지원결과 관리(안 제8조~제9조)

## 6) 비용환수(안 제10조)

### 다. 검토보고 (장흥용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,

#### 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
-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관련 사항을
- 안 제5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자 및 방법, 내용을
-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과 지원결과 관리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10조에서는 비용환수를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#### ○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취지

금번 조례안의 사업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4명, 2020년 14명, 2021년 17명, 2022년 17명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. 무연고 대상자는 마포구 관내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 사망자이며,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체인수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
##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서울시	531	583	814	1,102
마포구	4	14	17	17

○ 다음으로,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는 2020년 9,292명에서 2022년 9,81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독거노인은 2020년 2,622명에서 2022년 3,15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

## 마포구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

(단위 : 명, %)

구분	2020			2021			2022		
	독거노인	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	비율	독거노인	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	비율	독거인수	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	비율
인구수	9,292	2,622	29	9,716	3,059	32	9,810	3,152	33

○ 대한민국 「헌법」 제10조는 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” 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고, 마칠 때까지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. 이는 사망 후 본인의 시신에 대해 갖는 권리가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무연고사망자, 저소득층 등의 ‘죽음에 대한 권리’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의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로 해석됩니다.

이때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한 연고자가 있다면 이들이 최소한 망자와 이별할 수 있도록 장례가 보장되어야 하고, 장례할 사람이 없다면 공공부문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오래된 명언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.

○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사망 시에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평안하게 보내드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휴먼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으로 망인의 사후가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.

○ 다만, 금번 조례안을 통하여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며, 공공부문에게 취약계층 장례 지원 책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, 경제적 지원과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장례를 치러 줄 인적자원이 없다면 실질적인 장례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.

## 참고자료

### 1. 관련법령

####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1. 28., 2023. 3. 28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,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「민법」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, 2023. 3. 28.>

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21., 2023. 3. 28.>

⑥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#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계급여
2. 주거급여
3. 의료급여
4. 교육급여
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7. 자활급여

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(이하 "차상위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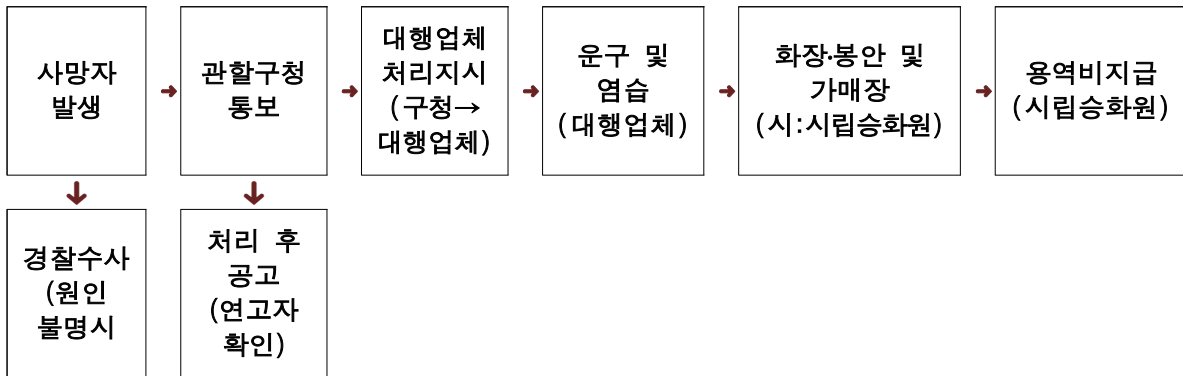
④ 삭제 <2014. 12. 30.>

제14조(장제급여)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(檢案)·운반·화장 또는 매장,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 2. 1.]

## 2.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흐름도

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